#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13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위성곤·이기헌·조 국

조승환 • 박정현 • 한병도

문대림 · 김영진 · 주철현

허 영 · 서영교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하고,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국제선박등록법」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현행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국내 해운사들이 선박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된 세금 부 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해외국가로 선적지를 이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 공급망 및 해운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전을 방지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

와 국가 공급망 유지를 위한 안정적 수송을 도모하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	과세특례) ①		
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			
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			
에 대해서는 <u>2024년 12월 31일</u>	<u>2027년 12월 31일</u>		
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			
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			
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			
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	_,		
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			
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경감한	2027년 12월 31일		
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			
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			
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